

신주발행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 공고

2021년 08월 0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2,376,237주(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21년 08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frac{\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1 + (\text{증자비율} \times \text{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발행가액은 구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1년 10월 07일)을 기산일로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text{Max}\{\text{Min}[1 \text{ 차 발행가액}, 2 \text{ 차 발행가액}], \text{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09월 03일

6.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9월 03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828961995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i)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

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인수 의무주식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v)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신주의 청약기간

- ① 구주주 청약일 : 2021년 10월 13일 ~ 2021년 10월 14일(2영업일간)
- ② 일반공모 청약일 2021년 10월 18일 ~ 2021년 10월 19일(2영업일간)

8. 청약취급처

- 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NH투자증권(주) 본, 지점
-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
- ③ 일반공모 청약자 : NH투자증권(주)의 본, 지점, 한양증권(주)의 본, 지점

9.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10. 납입기일(예정) : 2021년 10월 21일

11. 주금납입장소 : 신한은행 삼성역기업금융센터 지점

12.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13.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사항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9월 24일 ~ 2021년 09월 30일 (5영업일)
- ④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14. 기타

- ① 신주의 발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며,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kangstem.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 ③ 기타 본 주식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09월 03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2021년 08월 02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7층
강스템바이오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종 천

명의개서대리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